

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

의안 번호	242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 . 8. 13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장학금 대상을 1년 2회(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 선발) 선발 하므로, 장학생의 자격 또한 선발 시기에 맞춰 (2월말 현재 2년이상 → 선발당시 2년이상)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장학금의 자격기준인 통장재직기간 및 예체능 특기자의 자격을 당해연도 2월말 현재에서 '선발일 현재'로 개정(안 제2조)

제정(개정)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붙임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「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」 일부개정 계획

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당해 연도 2월말” 을 “선발일”로 하고, “1에”를 “어느 하나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당해 연도 2월말일” 을 “선발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년간 시당” 을 “연간 안산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자치행정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손 경 수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계장 김 태 균
	담당자 성명·전화	두 현 은 (행정 3446)

□ 신·구조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장학생의 자격) 장학생은 <u>당해연도 2월 말</u> 현재 2년이상 통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의한 중등교육대상자로 한다.	제2조(장학생의 자격) <u>선발일</u> <u>어느하나</u>
1. (생략) 2.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<u>당해 연도 2월 말일</u> 을 기준으로하여 과거 3년이내에 시 단위이상의 해당 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3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 2 <u>선발일</u> 3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은 <u>년간 시당 통장정수의 15%</u> 이내로 하되,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.	제5조(장학생의 정원) <u>연간 안산시</u>

□ 현행조례

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생활에 모범인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<개정 2002.05.21, 2012.11.26>

제2조(장학생의 자격) 장학생은 당해 연도 2월말 현재 2년이상 통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「초·중등 교육법」에 의한 중등 교육대상자로 한다. 다만, 의무교육 대상자 및 타 기관(단체)등으로 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기로 확정된 자는 제외한다. <개정 2002.05.21, 단서신설 2002.05.21, 개정 2004.7.22, 2006.1.5>

1.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목별 학업성취도가 "미"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 또는 교과목별 석차등급이 "5등급"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퍼센트인 자<개정 2002.05.21, 2004.07.22, 2006.1.5>
2.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, 체육,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당해 연도 2월 말일을 기준으로하여 과거 3년이내에 시 단위이상의 해당 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<개정 2002.05.21>
3.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<신설 2012.11.26>

제3조(추천)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장자녀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안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추천한다. <개정 2012.11.26>

- 제4조(선발)** ①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 심사하고, 매 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선발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. <전문개정 2002.05.21> <개정 2012.11.26>
- ②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07.22, 2012.11.26>
- ③장학생 선발 우선순위는 장학금 수혜횟수, 통장 근속년수, 생활정도 순으로 정한다. <신설 2002.05.21, 개정 2004.07.22>

제5조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은 년간 시당 통장정수의 15%이내로 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.<개정 1991.08.12, 2012.11.26>

제6조(장학금액)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학년도의 공납금(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)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. <개정 2002.05.21, 2012.11.26>

제7조(장학금의 지급) ①장학금의 지급은 공납금 납입기간 경과후 1개월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(통장)의 계좌에 입금한다.<전문개정 2002.05.21> <개정 2012.11.26>
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는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. <개정 2012.11.26>

제8조(지급의 정지)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1.26>

1.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할 때 <개정 2001.03.16>
2. 타 기관(단체)등으로부터 그 밖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된 때 <개정 2002.05.21, 2012.11.26>
3. 장학생이 퇴학,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
4.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<개정 2012.11.26>
5.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.

②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<개정 2012.11.26>

제9조(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)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, 보조금,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. <개정 2012.11.26>

제10조(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(2012.11.26)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